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광성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이사정산은 수도사용자 등이 이사 등으로 인해 변동될 경우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안내해주는 민원서비스로 현재 요금관리 시스템에서 이사 당일 신청 즉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“취득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.”고 되어 있습니다.

이러한 일선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규정에 따라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고

있는 실정입니다.

이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이사정산을 위한 사전신고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될 경우 “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”한 경우에만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을 “이사 당일” 즉시 요금을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